

##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051
----------	------

제출년월일 : 2005. 11. .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 1. 제 안 이 유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책임자의 건축물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그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2. 주 요 내 용

- 건축물 관리자의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정함.(제5조)
  - 보도 : 전체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부분 까지
- 제설·제빙작업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작업시간을 규정함.(제6조)
  - 주간에 내린 눈 :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제설·제빙작업은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눈이나 얼음을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도록 하고,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리고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도록 함. (제7조)
-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비치·관리하도록 함. (제8조)

### 3. 근 거 법 령

-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7359호 2005. 1. 27전문개정)
- 지방자치법 (법률 제7410호 2005. 3. 24일부개정)

4. 의안전문 : 불임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첨부 : 1. 기타참고자료(법령등) 사본 1부  
2. 입법예고 사본 1부

##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 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 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 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 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 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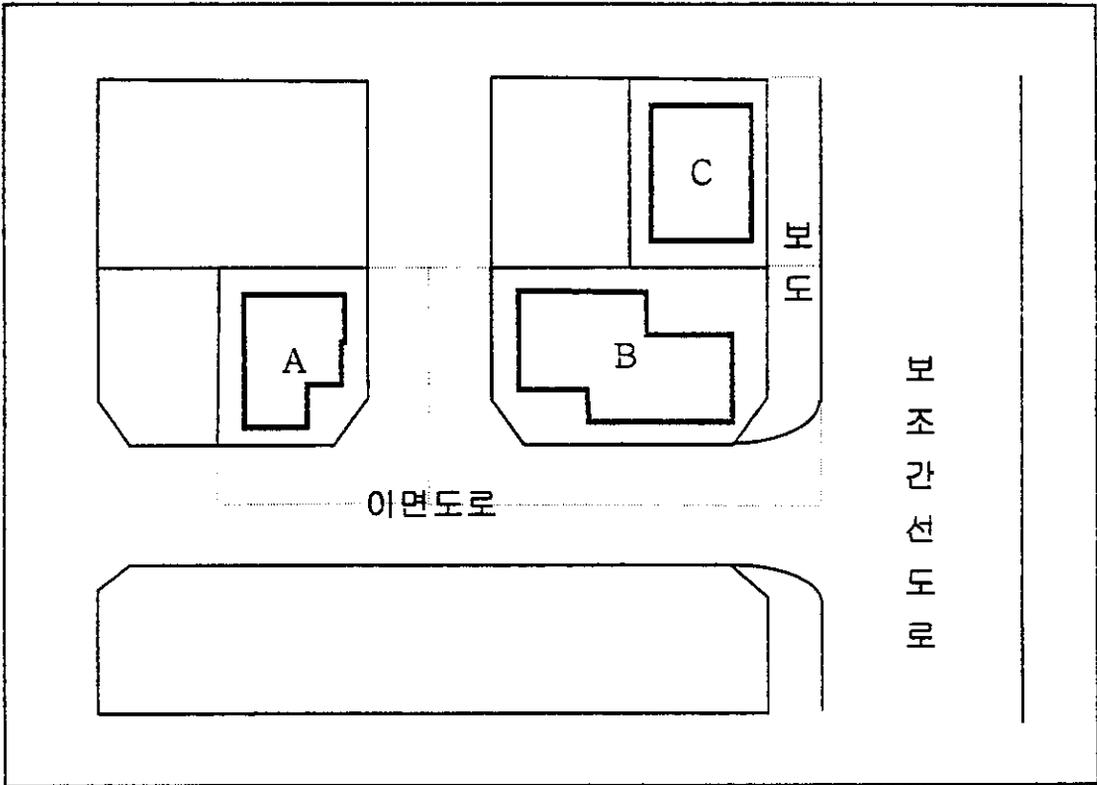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 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제설·제빙 책임범위 예시도



- ※ A건축물 :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 B건축물 : 보도와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 C건축물 : 보도에 접한 경우

# 관 계 법 령 발 취

## ○ 자연재해대책법

(법률7359호 2005. 1. 27전문개정)

제27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 ①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법률 제7410호 2005. 3. 24일부개정)

제15조(조례)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입 법 예 고

### 제천시 공고 제 2005 - 625호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31일  
제 천 시 장

####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건축물 관리책임자의 건축물주변의 제설·제빙 책임범위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조례 제정

3. 주요내용

- 당해건축물의 대지와 접한 보도·이면도로등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범위를 정함
  - 보도 : 전체구간
  - 이면도로 : 대지에 접한 도로 중앙까지
- 제설·제빙 작업시간을 규정
  - 주간 :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 야간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제설·제빙 작업방법
  - 눈이나 얼음은 도로 가장자리나 공터 적재
  - 제거가 어려울 경우 얼음을 녹게하는 재료나 모래등을 뿌리고, 녹은후 모래 제거
- 제설·제빙 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 비치 및 관리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5년 11월 20 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재난안전관리과)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640-5201~5202 FAX 640-5169 E-mail:jogh04@hanmail.net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변화와 실천으로 으뜸 충북을!



# 충청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표준(안) 시달

1. 소방방재청 방재대책기획팀-181(2005. 9. 21)호와 관련입니다.
  2. 2005. 1. 27 전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기 알려드리오니 각 시군에서는 지역여건, 도로실태 등을 감안하여 현지 상황에 적합한 조례를 금년 겨울철 재난대책기간 전까지 제정·운영하시기 바라며
  4. 앞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을 적극 홍보하여 대설시 스스로 자기 집, 자기 상가 앞의 눈을 치우는 성숙된 시민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표준(안) 1부. 끝.

## 충청북도



수신자 시군재난관련과장

★지방토목주사 **최민규** 지방토목사무관 **강기문** 재난관리과장 전결 09/26 홍두표

협조자 지방토목주사보 **김봉수** 지방토목주사 **경구현** 지방행정사무관 **서재식**

지방토목사무관 **김시영** 지방토목주사 **윤신부** 지방행정사무관 **정대운**

시행 재난관리과-3764 ( 2005.09.26. ) 접수 재난안전관리과-4060 ( 2005.09.26. )

☎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상당구 문화동 89) / http://www.cb21.net  
13) 220-4763 /전송 043) 220-4769 / cmkmin@cb21.net / 공개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표준(안)

### 관련규정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 ①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 ②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주요내용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함(안 제3조)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책임을 명시함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규정함(안 제4조)
  -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제설책임 순위를 정함
-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책임범위로 함
-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함(안 제6조)
  - 제설·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야간 적설시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토록 함
- 제설·제빙작업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
  -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함
-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안 제8조)
  -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동안 제설·제빙작업 도구 비치·관리토록 함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표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 제정 주체에 따라 “주민”을 도민, 시민, 군민, 구민으로 할 수 있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건축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간 제설·제빙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유형 또는 거주점유 특성 등을 감안하여 순위를 달리할 수 있음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첨부 예시도 참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의 도로여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설·제빙 시기를 조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설·제빙 작업에 필요한 재료(염화칼슘, 모래 등)를 관할 자치단체에 요청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사항 검토(수요량, 도로여건 등을 감안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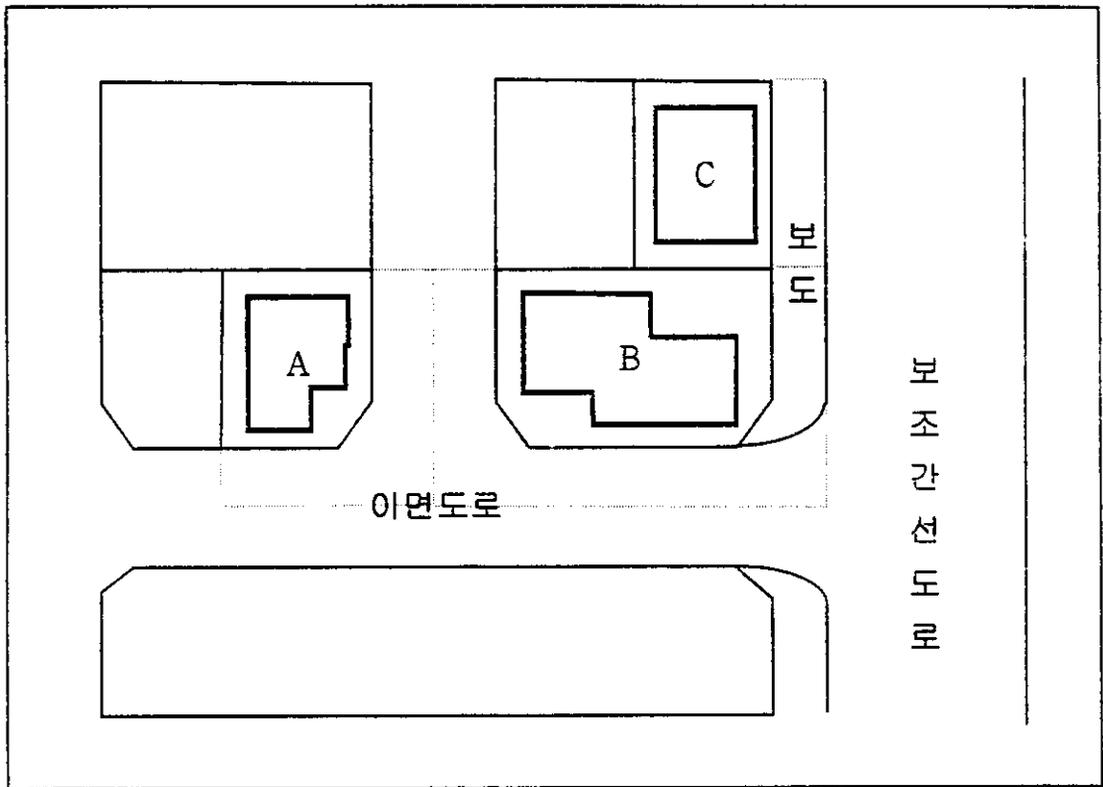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제설·제빙 책임범위 예시도



- ※ A건축물 :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 B건축물 : 보도와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 C건축물 : 보도에 접한 경우